

#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전적 기증관리 운영세칙

제정 2007. 08. 30.

개정 2008. 10. 31.

개정 2013. 03. 25.

## 제1조(목적)

이 운영세칙은 국가, 단체, 문중, 개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고 한다)에 기증한 고전적 자료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 하기 위해 운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(정의)

① “고전적”은 고도서, 고문서, 고지도, 고서화, 목판 등을 의미한다(이하 “고전적”이라고 한다).

② “기증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고전적의 모든 권리를 연구원에 양도함을 말한다.

③ “수증”이라 함은 기증 고전적을 연구원의 소장 고전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.

## 제3조(기증절차)

개인 또는 단체가 연구원에 기증 의사를 제의할 경우 원장은 담당자를 파견하여 기증조건, 기증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,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학술적 가치, 보존가치 등을 감정 받은 후 수증여부를 결정한다.

## 제4조(기증조건)

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, 기증자에게 감사패 등을 제작하여 전달할 수 있다.

## 제5조(기증범위)

원본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, 고전적과 함께 관련 유물도 일괄 기증할 수 있다.

## 제6조(수증제한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.

① 소장 경위와 출처,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고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 및 소송의 여지가 있는 경우

② 연구원에서 필요치 않는 고전적 또는 보관상의 문제와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# **제7조(수증증서의 교부)**

원장은 고전적을 수증한 후, 기증자에게 수증한 고전적의 명칭, 수량 등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수증증서(별지 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

#### **부칙**

1. 이 관리운영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개정 운영세칙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3. 개정 운영세칙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# 受贈證書

○○○ 貴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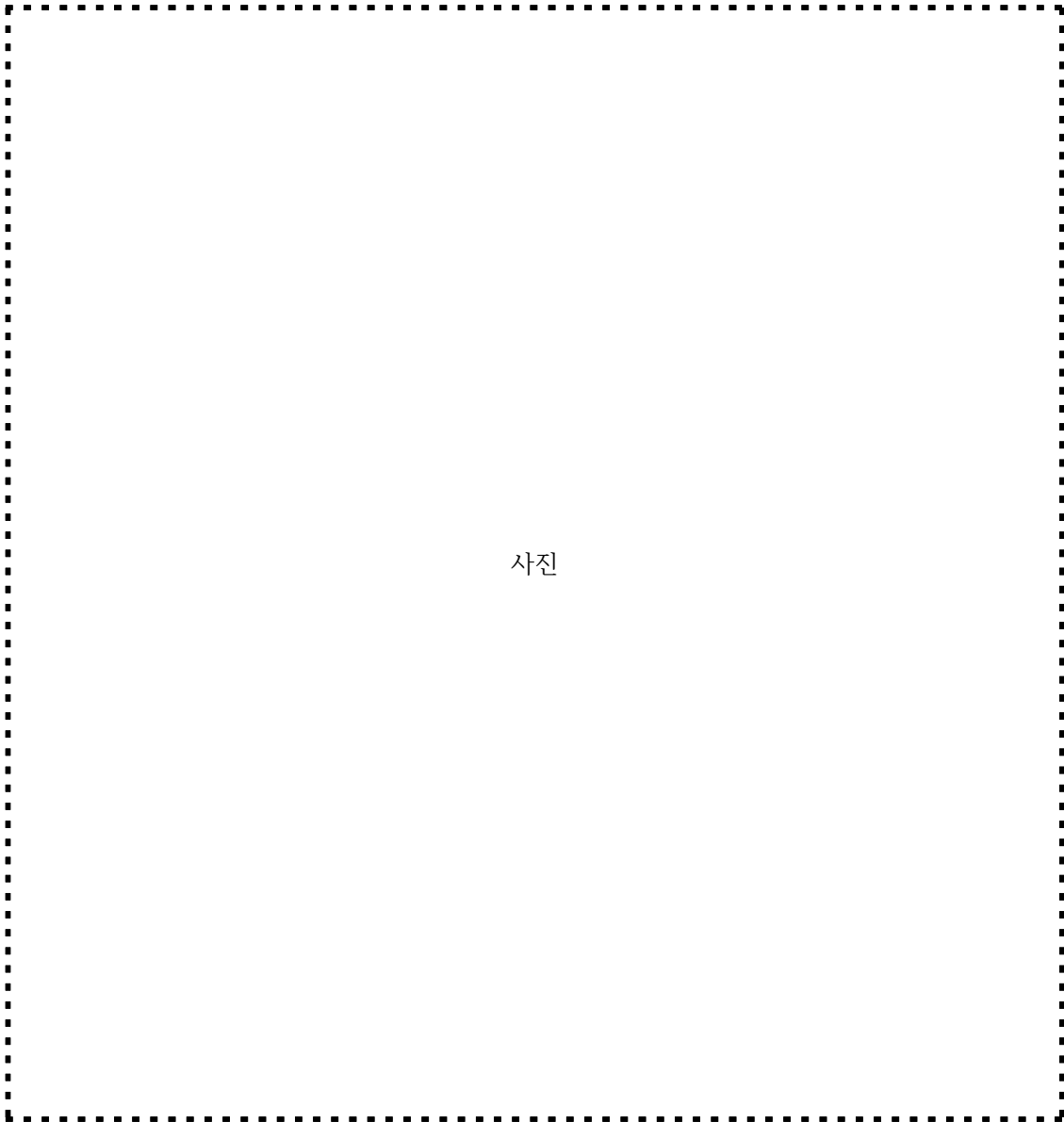
貴下が 寄贈하신 ○○○○○건 ○점의 文化財를 寄  
贈하신 큰 뜻을 기리고자 이 證書를 드립니다. 서울大學校  
奎章閣韓國學研究院에서 最先을 다하여 永久히 保存하고  
展示와 學術研究에 적극 活用하도록 하겠습니다.

201○. ○○. ○○.

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長



[별지 서식]



寄贈文化財目錄

名稱	點數	名稱	點數